

철원 마현천 유실지뢰 제거 및 준설 요구 집단민원 현장조정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집단민원 내용

-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는 접경지역이자 민통선 내 민북마을로, 마을을 관통하는 마현천에는 '98년, '99년 2차례 큰 홍수 이후 다수의 유실지뢰가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10여 년 동안 지뢰 제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.
- 또한 같은 기간 안전 문제로 마현천 준설 작업도 중단되어 매년 장마철 범람 등으로 인한 주택, 농지, 하우스 등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니 지뢰 제거 및 준설 등 복구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.

※ 집단갈등조정국 출범일인 '26. 1. 27.(화), 마현리 주민 328명이 연명으로 민원 접수

○ 주요 쟁점사항(오랫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)

- 관할 15사단 조직개편 등으로 관련 인력·예산이 축소된 데다, 2022년 인근 도창리 지뢰폭발 인명사고 등 안전 문제로 대지뢰 작전 전면 중단
- 민통선 내 접경지이자 군사작전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방사업 등 치수를 위한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함
- 마현리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준분지 지형으로, 관통하는 마현천에는 근본적으로 주변의 물과 흙이 모이고 쌓이기 용이함

□ 권익위 역할 및 성과

○ 권익위 조정 권한을 활용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·운영

- (군사) 국방부, 합동참모본부, 육군본부, 제15보병사단 등
- (행정) 강원특별자치도, 철원군 등

○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 5회 실시(마현천, 인근 농경지 등)

○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4회 실시

○ 민원 해결방안을 담은 조정안 협의 3회 개최

○ 조정사항 이행·관리를 위한 민관군협의체 구성

- 주민대책위, 15사단, 철원군, 강원도 등

□ 조정안 세부 내용

- ◇ 이 민원은 군사/행정, 중앙부처/지자체 등 성격과 운영 체계가 상이한 다수 기관이 관련된 사안으로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협의해 대책을 수립한다.
- ◇ 단발성 조치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안으로,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시급한 조치와 근본적 대책을 구분해 추진한다.
- ◇ 지역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, 인력, 장비 등 제반 부담을 분담하고,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 장병·공무원·주민의 안전 보장,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.

- ① 제15보병사단은 이 민원 하천에 대한 유실지뢰 탐지·제거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올해 장마철 전까지 주요 침수 피해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, 중장기적으로 해당 구간 전반에 대한 작전을 추진한다.
- ② 철원군은 제15보병사단의 작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수반되는 준설 등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력, 장비, 예산 등을 투입하되,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.
-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민원 하천 준설을 위한 하도정비사업 예산 신청 시, 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, 기타 접경지 지원사업 등 이 민원 하천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추진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.
- ④ 마현리 주민대책위, 제15보병사단, 철원군, 강원특별자치도는 조정사항 이행 관련 소통과 협력을 위해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내용, 일정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특히 투입되는 장병과 공무원,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,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- ⑤ 마현리 주민대책위, 제15보병사단, 철원군, 강원특별자치도는 위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,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. 본 조정합의 내용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.